

2026년 장애(예술)인 전문예술 활동지원 공모 안내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에서는 장애 예술인(단체)의 잠재된 예술성을 발굴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2026년 장애(예술)인 전문예술활동지원 사업 공모를 추진합니다. 본 사업은 2021년부터 시행된 「경기도 장애예술인 전문예술교육사업」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장하여 장애 예술인(단체)에게 보다 폭넓은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공모가 경기도 내 장애 예술인(단체) 여러분의 창작 활동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술적 성장과 활동 확장을 도모하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안내문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 공통 안내

■ 예술인 권리보장 및 법령 준수사항

- 선정된 예술인 및 단체(대표자)는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선정된 예술인 및 단체(대표자)는 안전한 문화예술 환경을 위하여 안전보건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 수행 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타인의 저작물 사용 시 원저작자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적법하게 사용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일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피보험자격 신고 및 보험료 납부 등 고용보험 의무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사업 선정자 준수사항

- 선정된 예술인(단체)는 사업에 적합하게 사업을 운영하여야 하며 연내에 지원금 집행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홍보물과 인쇄물을 제작하는 경우 지원사업명과 후원 내용(경기도, 경기문화재단)이 표기되어야 합니다.
- 재단이 사업 관리를 위해 현장 모니터링을 요청할 경우 현장 모니터링 제반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에 재투자하고 수익금 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선정된 예술인 및 단체(대표자)는 재단에서 운영하는 역량 강화 교육 및 컨설팅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합니다. 교육 불참 시 차기년도 사업 심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선정된 예술인(단체)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투명한 예산 집행을 위하여 **회계검증 시행**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 ※ 회계검증수수료 단가는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5년 회계검사 수수료 단가 가이드라인

구분	예산규모	수수료(원)
1	7백만원 미만	187,000
2	7백만원 이상 1천5백만원 미만	226,000
3	1천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302,000
4	3천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360,000
5	4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390,000

※ 자부담금을 포함한 총액으로 예산규모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모안내

○ 2026년 주요 변경사항

변경 전		⇒	변경 후	
구분	내용		구분	내용
지원금	(단체) 30백만원 (평균) (개인) 3백만원 (정액)		지원금	(단체) 25백만원 (평균) (개인) 10백만원 (평균)
연속지원	별도 규정 없음.		연속지원	*2026년부터 3년 연속 지원 예술인(단체) 신청제한

※ 본 사업에 3년 연속 선정될 경우, 다음연도 지원 신청이 제한됩니다.

(2026년 선정 실적부터 적용되며,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연속 선정 시 2029년 신청 제한)

○ 신청자격

▶ 공통신청자격

◆ 지원신청자격

- 예술인 및 예술단체
-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에 의한 예술법인 및 단체
- 문화예술시설 운영자
- 기타 해당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예술인 및 예술단체

▶ 지원신청 제외사항

◆ 지원 신청할 수 없는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단, 접수 마감일 기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 확인서를 보유 했을 경우 신청 가능)
- 국·공립(도·시·구·군립) 문화예술기관·단체 및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학교, 종교기관, 친교기관 및 이들 기관의 소속 또는 운영 단체
- 지원금을 지원받고도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관련법령 규정을 위반한 개인·단체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마감일까지 경기문화재단 지원사업 정산보고서를 미제출한 개인·단체
- 성희롱·성폭력 등 모든 성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해 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해당 구성원이 포함된 단체
(단, 관련 수사 및 기소 등이 없더라도 성희롱·성폭력 등 모든 성범죄가 명확히 드러난 자 또는 단체, 혹은 그러한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의 경우 재단 내부 협의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 지원금 반납 요청에도 불구하고 반납하지 않은 개인·단체
- 선정 후 경기도 주소지 확인 시 공고일(2026.3.27.) 이후 전입한 개인·단체
- 그 외 신청할 수 없는 대상은 사업별 신청자격 기준 참고

◆ 지원 신청할 수 없는 사업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기관의 지원사업에 선정된 사업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지역문화재단 등)
- 정치적, 종교적 목적의 사업
-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 시설의 건립과 매입, 재건축 사업
- 기금 적립과 용자 지원 사업
-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조직의 사업
- 타인의 저작물을 도용, 표절하는 등 저작권 침해 및 기타 위반 사항이 있는 사업
- 기타 공공성에 위배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

◆ 공통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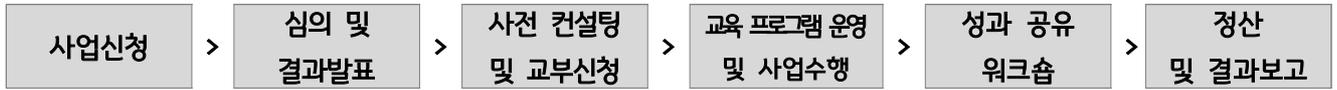
- 심의에서 미선정된 사업은 별도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 심의 점수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심의위원 명단과 심의총평 외에 개별적인 미선정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 지원자격 미달 또는 필수제출자료 미비 시 행정심의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 표절 논란 등 저작권 관련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선정 이후라도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해당자는 일정 기간 공모지원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기관(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지역문화재단 등)의 지원사업에 선정된 동일 사업은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선정 이후에라도 확인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자료 내 허위 사실이 확인될 시 선정 이후에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단체명이 다르더라도 대표자가 동일인일 경우, 중복 신청으로 간주합니다.**
- **단체 대표자가 단체와 개인으로 이중 신청할 경우, 중복 신청으로 간주합니다.**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내 개인 계정으로 단체 사업을 신청한 경우 심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신청서 기재 정보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의 사업 신청정보가 상이할 경우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신청정보 기준으로 심의합니다.(단체 대표자, 소재지 등)
- 접수 마감일까지 경기문화재단 지원사업 정산보고서를 미제출한 개인·단체는 지원신청 불가합니다.
- 선정 후 주소지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 등)를 제출할 수 없거나, 공고일(2026.3.27.) 이후 전입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추진일정

구분	일시	내용
공고	2026.3.27.(금) 10:00	○ 경기문화재단 누리집 (ggcf.kr)
접수기간	3.27.(금) ~ 4.10.(금) 17:00	○ 온라인 신청 접수 - 접수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ncas.or.kr)
심의추진	4.13.(월) ~ 5.6.(수)	○ 행정심의, 서류심의, 인터뷰심의 진행
결과발표	5.7.(목) 예정	○ 경기문화재단 누리집 (ggcf.kr)
사업기간	2026.5. ~ 11.	○ 선정 후 사업수행 절차 안내 예정

※상기 일정은 재단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추진절차



○ 심의절차



※ 단, 예술인(개인) 유형은 서류심의(2차)를 최종단계로 하며 **필요시 비대면 혹은 서면질의를 통해 사실 확인 절차 등을 추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지원신청 방법



▶ 재단 누리집 주소: ggcf.kr > [공모·신청] > [공모지원] > [사업공고] > [공모] 페이지에서 조회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주소: ncas.or.kr > [지원신청가능사업] 조회

▶ 안내사항

- 우편, 이메일 등 서면 접수는 불가합니다.
- 재단 누리집에 업로드 되어있는 지원신청서(지정서식) 외 추가 제출자료는 심의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에 업로드 하는 **파일 용량이 50MB를 초과할 경우 파일이 정상적으로 등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일이 등록되지 않아 제출 서류가 누락된 경우,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반드시 업로드 완료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용량이 50MB를 초과하더라도 시스템에 정상적으로 업로드된 경우에는 심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 접수 **마감일은 접속자 폭주로 인해 서버가 지연되거나 다운될 수 있으니 마감 기한 전 여유있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기간 내 최종 지원 신청이 완료되지 않은 건은 접수된 것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이용 방법은 공고문 첨부파일의 매뉴얼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구분	문의처		운영시간
채팅 문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카카오톡에 가입하셔야 이용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 또는 우측 QR 접속 https://open.kakao.com/o/sbT2Comi		○ 경기문화재단 예술지원팀 - 3.27.(금) ~ 4.10.(금) - (평일) 10:00 ~ 16:00
유선 문의	모든 장르		031-231-0870
접수 시스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고객센터		1577-8751 (평일) 9:00 ~ 18:00

※ 점심시간(12:00 ~ 13:00) 및 공휴일(주말 등 포함)은 유선 연결이 불가합니다.

※ 공모 접수 기간에는 문의 전화/메시지 폭주로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고문의 '자주 묻는 질문'을 먼저 확인하시면 문의 내용에 대한 사항을 더욱 신속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현장안내

▶ IT 활용이 익숙하지 않거나 지원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현장안내를 운영합니다.

4월 2일(목)	4월 7일(화)	4월 9일(목)
· 운영시간 : 10:00 ~ 17: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운영장소 : 경기문화재단 1층 경기 예술인의 집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 지정된 일자/시간 외에는 현장안내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 방문 전 사업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미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신청서를 미리 작성한 후 저장한 파일(usb, 이메일 등)을 가지고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한 절차를 위해 사진 파일 첨부, 한글 작업 등 지원신청서 작성은 도와드리지 않습니다.		
※ 오시는 길		
- 수원시청역 9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 또는 버스 92(92-1) 탑승 후 경기문화재단. 매탄주공4.5단지 하차		
- 수원역 4번 출구 수원역.노보텔수원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9,2-1,9-1,92,92-1 탑승 후 경기문화재단.매탄주공4.5단지 하차		
※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드립니다.		

■ 사업세부안내

○ 장애예술인(개인)

구 분	내 용	
지원내용	○ 잠재된 예술성을 발굴하고 전문적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창작·발표 등 예술활동 지원	
지원분야	○ 기초예술분야(문학, 시각, 공연, 전통 등)의 모든 예술활동(전시·공연·행사 등) 지원	
지원규모	○ 건당 (평균) 1,000만원 / 15건 내외 선정 예정 ※ 선정규모 및 지원 금액은 심의 결과에 따라 조정(차등 지원)될 수 있음 ※ 문학의 경우 지원금 전액 창작지원 상금방식으로 지급될 예정임	
신청자격	○ 경기도에 거주(주소)하면서 다음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는 예술인 ① 예술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및 기획 형태의 예술창작활동을 하는 장애예술인 → 근거: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예술인 복지법 제2조 ② 예술활동증명을 발급받았거나, 발급받지 않았더라도 이에 준하는 예술활동이 인정되는 장애예술인	
참고사항	○ 신청자격 관련 제출 서류 ① 주민등록초본 ② 장애인등록증(혹은 복지카드) 사본 ※ 예술인 신뢰 존중 및 지원 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주민등록초본은 선정결과 발표 이후에 제출 합니다. ※ 제출하는 주민등록초본상 현재 주소지의 경기도 전입일은 공고일(2026.3.27.) 이전 이어야 합니다.	
필수 제출자료	공통	원고분량(문학 지원에 한함)
	○ 지원신청 제출 서류 1. 지원신청서 2. 개인소개서 3. 주요 예술활동 실적(최대 3건) 4. 사업계획서(창작발표) 5.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6. 원고 및 출판계약서(‘문학’에 한해 제출) * 5번은 선정 후 1개월 내 제출	① 시·시조 : 10편 ② 소설(단편) : 2편 ③ 소설(중편 또는 장편) : 1편 ④ 평론, 수필 : 5편 ⑤ 아동문학(동시, 동화), 희곡 등 : 발간할 책 원고 분량 전체 ※ 소설 200자 원고지 기준(매수 이하) : 100매(단편), 500매(중편), 1,000매 내외 (장편) 분류 권장 ※ 제출원고는 미발표 신작에 한함
심의계획	○ 2단계 심의 : 1차 행정심의 → 2차 서류심의 ○ 전문적인 심의를 위하여 장르별 전문가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진행 * 필요시 비대면 혹은 서면질의를 통해 사실확인절차를 추가로 진행할 수 있음 * 문학의 경우 제출원고가 정해진 원고 분량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미달 또는 초과) 평가 시 불이익이 반영될 수 있음	
비고	○ 활동 지역은 경기도에 한함 ○ 선정 작가는 출판계약서 및 제출한 원고를 바탕으로 유통과 판매를 전제로 연내(2026) 작품집을 발간해야 합니다. 이때 선정작(신작 원고)은 반드시 수록하여야 하며, 그 외 단행본 구성은 작가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장애예술단체

구 분	내 용
지원내용	○ 예술적 성장과 육성을 위하여 기획·창작·발표 등 예술활동 지원
지원분야	○ 기초예술분야(문학, 시각, 공연, 전통 등)의 모든 예술활동(전시·공연·행사 등) 지원
지원규모	○ 건당 (평균) 2,500만원 / 12건 내외 선정 예정 ※ 선정규모 및 지원 금액은 심의 결과에 따라 조정(차등 지원)될 수 있음
신청자격	○ 경기도에 소재하면서 장애예술인이 소속된 예술단체로서, 다음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는 예술단체 ① 단체 소속 구성원 중 장애인 구성원 수가 30% 이상인 단체 ② 예술활동(프로젝트) 참여자(관객 및 교육 대상자 등 제외) 중 장애인 구성원 수가 30%인 단체 ※ 지원신청 시 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예술인 명단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하신 명단 내 주요 참여 장애예술인은 선정 후 임의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재단의 사전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 단체 대표자 또는 프로젝트 구성원 중 중추적인 역할로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참고사항	○ 신청자격 관련 제출 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② 장애인등록증(혹은 복지카드) 사본 ※ 예술인 신뢰 존중 및 지원 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은 선정결과 발표 이후에 제출 합니다. ※ 제출하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상 경기도 소재지의 개업 연월은 공고일(2026.3.27.) 이전이어야 하며, 발급 연월은 결과 발표일(2026.5.7.)이후 이어야 합니다.
	공통
필수 제출자료	○ 지원신청 제출 서류 1. 지원신청서 2. 단체소개서 3. 주요 예술활동 실적(최대 3건) 4. 사업계획서 5.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심의계획	○ 3단계 심의 : 1차 행정심의 → 2차 서류심의 → 3차 인터뷰심의 ○ 전문적인 심의를 위하여 장르별 전문가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진행
비고	○ 낭독, 쇼케이스, 공연, 오픈스튜디오 등 일반적인 공연·전시 형태에 국한되지 않은 형태의 결과물 발표 가능 ○ 활동 지역은 경기도에 한함

■ 지원주체별 심의기준

○ 공통

- ▶ 2025년도 사업에 선정된 예술인(단체)의 사업 수행 모니터링 결과를 금년도 심의에 환류하여,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 최대 10점 이내의 가점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 선정된 예술인 및 단체의 모니터링 결과는 2027년 사업 지원신청 시 심의 가점으로 반영될 수 있음)

○ 장애예술인(개인)

▶ 문학

항목	심의기준(내용)	배점(100)
적정성 및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목적에 부합한 계획 및 결과물(원고)이다. • 원고의 주제가 적절하고 목표가 명확하다. 	30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 원고에 예술성, 참신성, 독창성이 있다. • 활동계획과 추진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다. 	30
사업 추진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한 원고의 우수성 및 완성도가 높다. • 효과적으로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자질을 보유하고 있다. - 예술성, 독창성, 완성도 등 	30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사업을 통해 예술적 성장과 발전 가능성이 기대된다. 	10

▶ 시각예술·공연예술·다원예술 등

항목	심의기준(내용)	배점(100)
적정성 및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목적에 부합한 프로그램이다. • 사업 취지 및 장애예술에 대한 이해와 정보, 필요와 욕구에 기반하는 프로그램이다. 	30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 작품의 예술성(작품수준), 참신성, 독창성이 있다. • 창작활동계획과 추진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다. 	30
사업 추진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내용 구성이 현실적이고 타당하며,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다.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사업 운영 계획이 구체적이고 충실하다. 	30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사업을 통해 예술적 성장과 발전 가능성이 기대된다. • 해당 사업의 추진이 문화예술 진흥·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10

○ 장애예술단체

항목	심의기준(내용)	배점(100)
적정성 및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목적에 부합한 프로그램이다. • 사업 취지 및 장애예술에 대한 이해와 정보, 필요와 욕구에 기반하는 프로그램이다. 	30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자 모집, 공간 활용, 프로그램에 대한 목표와 추진 방향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예산 집행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었다. • 장애예술인의 참여가 적절하게 구성되었다. 	30
사업 추진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실한 이행을 통해 사업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 •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관련 분야 지식 및 경험, 노하우 등) 	30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의 문화예술 참여 활성화와 향유 확대에 기여한다. 	10

자주 묻는 질문 FAQ

■ 신청자격 및 거주지 관련

1	Q. 장애예술인(개인)의 경우, 경기도에 거주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장애예술인(개인)은 공고일(2026.3.27.)이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여야 합니다.
2	Q. 장애예술단체의 경우, 대표자가 경기도에 거주해야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상관없이,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상의 소재지가 경기도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3	Q. 비장애 예술인(단체)으로만 구성된 단체도 지원신청이 가능한가요? A. 본 공고의 지원 대상은 장애예술인이 소속된 예술단체로 명시되어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두 가지 기준 중 최소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단체 구성원 기준: 전체 구성원 중 장애인 비율이 30%이상 ② 프로젝트 참여자 기준: 해당 예술활동(프로젝트)에 실제 참여하는 인원 중 장애인 비율이 30%이상
4	Q. 장애인 등록증이 꼭 있어야 하나요? A. 네,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해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을 필수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제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예술인(개인) : 본인의 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 장애예술단체 : 대표자 본인 또는 단체에서 지정한 주요 장애인(중추역할) 예술인의 증빙자료
5	Q. 예술활동증명이 없으면 신청이 불가한가요? A. 아닙니다, 예술활동증명을 보유하지 않으셨더라도, 그에 준하는 예술활동을 꾸준히 이어오신 장애예술인이 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해주신 예술 활동 이력이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지는 추후 전문가 심의를 통해 검토될 예정이오니 참고바랍니다.

■ 지원내용 및 규모

1	Q. 개인과 단체의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 개인은 평균 1,000만원(15건 내외), 단체는 평균 2,500만원(12건 내외)규모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2	Q. 개인의 경우 문학분야는 지원금 지급 방식이 다른가요? A. 네, 문학의 경우 지원금 전액이 창작지원 상금방식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3	Q. 작년에 지원받았는데 올해 또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2026년부터는 3년 연속 선정될 경우 그 다음 연도(2029년)에는 신청이 제한되는 '연속지원 제한 규정'이 신설되었으므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 및 심의 절차

1	Q.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나요? A. 모든 접수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서면 접수는 불가합니다.
2	Q. 공고문에 없는 추가 자료를 제출해도 되나요? A. 아니요, 지정서식 외 추가 제출자료는 심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3	Q. 제출할 때 파일명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A. 개인은 장애예술(개인)_이름으로, 단체는 장애예술(단체)_단체명으로 저장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편성 및 집행관련

1	<p>Q. 예산 항목을 가득 채워서 편성해야 하나요?</p> <p>A. 예산은 사업 계획에 근거하여 산출 근거가 명확하고 적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금액을 맞추기보다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실제로 필요한 예산을 바탕으로 편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예산 계획 수립 시에는 신청하는 총 지원금액에 맞춰 오차없이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선정 후 지원금액에 따라 세부 예산계획을 다시 수립하셔야 할 수도 있으니 초기 단계부터 사업 목적에 꼭 필요한 항목들로 예산을 계획해주시기 바랍니다.</p>
2	<p>Q. 회의비는 최대 얼마까지 책정할 수 있나요?</p> <p>A. 회의비는 총 사업비의 5%이하로 편성하여 집행 가능합니다.</p>
3	<p>Q. 대표자 사례비(또는 본인 창작비)를 예산에 편성할 수 있나요?</p> <p>A. 네, 가능합니다. 본인 또는 대표자의 사례비(기획비)는 전체 지원금의 최대 20% 이내에서 편성 및 집행이 가능합니다. 단, 한도 금액은 최대 200만 원까지로 제한됩니다.</p>
4	<p>Q. 제출할 때 파일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p> <p>A. 개인의 경우 장애예술(개인)_이름,으로, 단체의 경우 장애예술(단체)_단체명으로 저장하여 제출바랍니다.</p>
5	<p>Q. 단체 대표자의 가족이나 관계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나요?</p> <p>A. 아니요, 불가합니다. 사업 신청 단체의 대표자, 임직원 및 그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는 보조금(강사료, 원고료, 인건비 등 포함) 을 집행할 수 없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 의무사항 및 유의사항

1	<p>Q. 선정 후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이 있나요?</p> <p>A. 선정자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안전보건서약서 제출, 역량 강화 교육 및 컨설팅 참여, 회계검증 시행 등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p>
2	<p>Q. 타 기관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p> <p>A. 동일한 사업(프로젝트, 원고 등)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타 문화재단 등의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한 경우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p>
3	<p>Q. 사업 진행 중에 세부 내용이 변경되면 어떻게 하나요?</p> <p>A. 부득이하게 사업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 사전에 반드시 담당자와 협의 후 '사업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되지 않은 사업내용의 임의 변경 및 추진 시 보조금 환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p>
4	<p>Q. 선정 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표(보고)가 필수인가요?</p> <p>A. 네, 선정된 모든 프로젝트(작품)은 발표(또는 발간)되어야 합니다. 또한, 발표하는 장소는 경기도 내로 한정합니다.</p>